

긴급 종합보고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위기 및 전주시 행정 귀책사항 종합보고서

누적 적자 약 600억 원 — 구조적 적자 운영체계
재활용품 무단반출·절도(피해 추정 약 80억 원) 및 행정 감독 부실
예산 확보·시설개선 약속(총 12건·약 167억 원) 불이행
재활용 재분리·스티로폼 처리 투입비 정산 요청

I. 보고 개요

1. 시설 개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 약 30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전주시 환경행정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사는 2016년부터 약 10년간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폐기물 처리 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을 지속해 왔습니다.

2. 보고 목적

본 보고서는 시설 운영이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지속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원인이 운영사의 책임이 아니라 전주시의 행정 귀책사유(처리단가, 수집·운반 관리·감독 부실, 약속 불이행 등)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요구사항과 향후 대응 방침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3. 핵심 요지

- 10년간 누적 적자 약 600억 원 — 운영 효율과 무관하게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운영체계.
- 재활용품 무단반출·절도 사건으로 관계자 다수가 입건되었고, 직·간접 손실은 약 80억 원으로 추정.
- 전주시가 공문(자원순환과-2509호)으로 약속한 총 12건·약 16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시설개선이 약 2년간 미이행.
- 재활용 재분리·스티로폼 처리에 투입된 인건비·경비에 대한 정산 미정산.

II. 운영 위기 실태 (구조적 분석)

1. 10년 누적 적자 약 600억 원

운영사는 시설 유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자를 감내하며 운영해 왔으나, 누적 손실은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행정체계와 사업구조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시설 투자·유지보수는 물론 정상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며, 그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 전국 최저 수준의 처리단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는 전국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톤당 약 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하루 300톤 기준으로 환산하면 구조적 손실이 누적됩니다.

구분	처리단가(톤당)	비고
전주시	약 9만 원	전국 최저 수준
타 지자체 평균	약 16만 원	톤당 약 7만 원 차이
환산 손실	일 약 2,100만 원	연간 약 70억 원 규모

즉, 운영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물질 혼입에 따른 설비 파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비닐류·금속류(쇠숟가락, 칼, 가위, 냄비, 프라이팬, 철사, 유리병, 아령 등) 이물질이 대량 혼입되어, 파쇄기·선별기·이송설비 등 핵심 설비가 반복적으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긴급 수리·부품 교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처리외주비로 톤당 약 16만 원을 지급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4. 수집·운반체계 관리·감독 부실

수집·운반업체들이 혼합 상태의 재활용품을 새벽 시간대부터 대량 반입·무차별 하역함에 따라, 재선별 인력 증가, 추가 장비 투입, 가동률 저하, 유지관리비 증가, 산업재해 및 화재 위험 증가 등 부담이 운영사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배터리 혼입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근무자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나, 운영사의 수년간 시정 요청에도 실질적 단속·행정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현안별 상세 및 전주시 귀책사항

1. 재활용품 무단반출·절도 사건 (피해 추정 약 80억 원)

재활용품(유가물)의 무단 반출 및 사적 뒷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전주시 소속 환경관리원 및 대행업체 관계자 등 다수가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스티로폼·빈병·캔류 등 절도·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보도). 유가물이 시설 반입 전 외부로 유출될 경우 운영 재원이 직접 훼손되며, 운영사가 파악한 직·간접 손실 규모는 약 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주시 귀책: 본 사안은 전주시의 지도·감독 소홀 등 행정적 귀책사유와 결부되어 발생한 것으로, 시는 “수사 중”을 이유로 선제적 직무배제 등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지도·감독 권한의 직무 해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 통보 후 이행 요구사항]

- 피의자 전원 직무배제 및 즉각적 중징계(파면·해임) 착수
- 시 재정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불법이익 환수

- 연루 민간 대행업체 용역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 제한)
- 청소차량 이동 동선 및 반입 계량 시스템 전면 전산화 개편
- 시의 행정 감독 부실에 따른 손실보전금 약 80억 원 지급 청구

2. 예산 확보·시설개선 약속 불이행 (자원순환과-2509호 / 화재 수습비 16억 원)

전주시는 당사가 본 사업장에 근로자 11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시설개선을 시행하겠다고 공문(자원순환과-2509호, 2024.10.30. / 당사 공문 리싸이클링 제2024-277호, 2024.10.25.)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위 검토의견서에서 화재 수습비 정산(16억 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80%를 전주시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모순: 전주시는 화재 수습비 16억 원을 당사에 예산 집행하였음에도, 이후 담당부서가 “반환하지 않으면 매월 지급 사용료에서 차감하겠다”고 통지하여 당사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이는 스스로 문서로 인정·집행한 부담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사후 번복·회수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한 기망 행위와 유사하게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3. 재활용 쓰레기 재분리 투입비 정산 (약 30억 원)

운반업체(시 직영 및 외주)가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무단 투기·혼합 배출함에 따라, 당사는 수년간 매일 평균 외부 인력 12명을 투입하여 재분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수차례의 공문·구두 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은바, 전주시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분리 인건비·경비 등 투입비의 정산을 요청합니다.

투입 인력	1일 평균 12명 / 월 24일 근무
산정 항목	인건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등
월 최소 투입비	약 5천만 원
정산 기간	2021년 6월분부터 (소멸시효 5년 소급 —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개략 산정액	약 30억 원

※ 현재 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에 소급 정산 내역의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4. 공동주택 배출 스티로폼 반입 투입비 정산 (약 5억 원)

본 사업장 반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배출 스티로폼이 반입되어 처리 물량이 과중되었고, 이로 인해 스티로폼 처리 인력의 추가 투입과 야간·휴일 근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투입비의

소급 정산을 요청합니다.

정산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5월
산정 항목	주간·야간·휴일 근무 비용, 4대보험, 기타 비용
개략 산정액	약 5억 원

IV. 종합 요구사항

위 현안별 요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은 산정 근거가 상이하며, 화재 수습비는 아래 12건·167억 원에 포함됩니다.)

No	요구 내용	금액	근거
1	재활용품 무단반출·절도 손실보전금	약 80억 원	시 지도·감독 소홀, 수사 진행
2	예산 확보·시설개선 이행 (총 12건)	약 167억 원	자원순환과-2509호 검토의견서
	화재 수습비 정산 — 시 80% 부담	16억 원	실시협약 불가항력 조항
3	재활용 재분리 투입비 (2021.6~, 5년 소급)	약 30억 원	국가재정법 §96·지방재정법 §82
4	공동주택 스티로폼 처리 투입비 (2026.1~5)	약 5억 원	반입 대상 외 폐기물 처리

V. 행정·법적 대응 방침

1. 감사청구

전주시 자원순환과의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및 약속 이행 관련 행정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민사상 조치

화재 수습비 차감 통지에 대한 현행 민사소송과 별개로, 약속 불이행 및 귀책사유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3. 형사상 검토

담당부서의 부작위 및 행정처분이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소지에 관하여, 감사 및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상 조치(고발 등) 여부를 검토합니다. (구체적 죄책 구성은 감사 청구서 및 고발장 등 별도 서면에서 전개)

4. 사업장 안전 확보 자구조치

- (절도 차량 출입 제한) 범죄에 이용된 특정 차량 약 50여 대에 대하여 2026년 6월 19일부로 사업장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향후 특정 대상 추가 시 즉시 출입금지 조치.
- (피해자-피의자 분리 원칙) 현장 내 폭언·욕설·협박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분리 조치 등 사업장 안전망 확보 조치를 시행.
- (반입 제한) 분리배출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차량·업체에 대한 폐기물 반입 거부 조치 적용.

VI. 정책 제언 (시장 당선인님께)

본 사안은 특정 민간사업자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환경행정의 지속가능성·시민 안전·자원순환정책의 신뢰성이 걸린 공공정책 과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특별점검 실시 (운영 전반)
- 수집·운반업체 특별감사 (유가물 유출·무단 반출·계약 위반·혼합 반입)
- 현실적 운영원가를 반영한 처리단가 재산정(현실화)
- 수거-선별-처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책임소재 명확화 및 유가물 유출 방지)

VII. 관련 근거 및 행정사항

1. 관련 근거

- 운영사가 지속 제기해 온 공식 시정 요청 및 누적 공문 발송 이력
- 전주시 회신 공문 자원순환과-2509호(2024.10.30.) 및 검토의견서(총 12건·약 167억 원)
- 재활용품 절도 관련 언론 보도 (중앙일보, 2025.9.1. 등)
- 전북일보(2026.6.10. 사설, 2026.6.9. 기획보도), 전북도민일보(2026.4.27. 기획보도) 등 보도
- 감사원 감사 결과 공표 사항 —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 부실 및 행정 관리 소홀 적시

※ 위 언론 보도 및 감사 결과의 정확한 일자·제목·내용은 공식 제출 전 원문으로 최종 확인 요망.

2026년 6월 18일

전주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일동